

# 「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및 「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## □ 정원조례 개정사항

### ○ 조정사유

- 국가정책(중앙부처 요구사업) 및 지역현안 추진에 따른 정원 확보 : 28명
-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신설 : 6명

### ○ 조정내역

- 정원의 총수 조정 : 1,641명 → 1,675명(+34)
- 직급별 정원 조정

직급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5급	72(+1)	38(+1)	3	11	20
6급 이하 소계	1,588(+33)				

### ※ 분야별 정원 조정 세부내역

연 번	세부내역	정 원	비 고
1	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(시군구 총괄)	행정+1	행 정 안 전 부
2	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(복지)	사회복지+3	행 정 안 전 부
3	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(간호)	간호+16	행 정 안 전 부
4	다함께돌봄(초등돌봄)	행정+1	보 건 복 지 부
5	위기청소년 지원	사회복지+1	여 성 가 족 부
6	자치단체 정보공개 전담인력 보강	행정+1	행 정 안 전 부
7	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	사회복지+2	보 건 복 지 부
8	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	세무+3	행 정 안 전 부
9	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	한시정원+6	

### -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

부서	구분		정원	운영시한
	직종	직급		
신청사건립추진단	일반직	5급	1	2023년 6월 30일까지
		6급 이하	5	

○ 비용추계 : 1,198,107천원(시비 보조금 508,500천원 포함)

## □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

### ○ 개정사유

-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함

### ○ 개정내용

제3조의2(한시기구)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둔다.  
부칙 제2조(한시기구의 존속기한) 제3조의2에 따른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